



제 438회 (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리볼빙 수수료 등 고지의무 법정화〉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24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리볼빙 수수료 등 고지의무 법정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나경원의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6. 4. 6.
3. 회 부 일 : 2026.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등).

Ⅲ. 검토의견: 리볼빙 수수료 등 고지의무 법정화

-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의 결제를 이월하는 약정(이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 함)을 체결할 때, ① 결제일에 결제해야 할 최소 비율, 수수료율·연체료율, 일시 상환방법 등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하고, ② 잔여금액의 결제를 청구할 때마다 이월 비율, 청구금액, 수수료·연체료, 이월 잔여기간 및 잔여금액 등을 고지하며, ③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④ 신용카드업자가 이와 같은 설명서 제공 및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및 제7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6조의6(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시 고지의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u> <u>1. 신용카드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신용카드이용대금의</u>

현행	개정안
제72조(과태료) ① . ② (생략)	<u>최소 비율</u> 2. <u>수수료율·연체료율</u> 3. <u>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매 결제일에 청구될 예상 금액</u> 4. <u>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청구될 총 수수료</u> 5. <u>일시 상환 방법</u> 6. <u>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u> ② <u>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따른 잔여금액의 결제를 청구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u> 1. <u>신용카드이용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하는 비율 및 청구금액</u> 2. <u>수수료·연체료</u> 3. <u>이월 잔여기간 및 잔여금액</u> 4. <u>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매 결제일에 청구될 예상 금액</u> 5. <u>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청구될 총 수수료</u> ③ <u>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용카드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u>
	제72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현행	개정안
③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④ . ⑤ (생략)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제1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④ . ⑤ (현행과 같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란 신용카드회원이 카드이용대금 중 카드사와 미리 약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 달 결제월에 잔여결제금액과 이월약정 수수료를 합산해 납부하는 결제방식¹⁾의 금융서비스로서, 일반적으로 “리볼빙”이라 함.

이는 단기 유동성을 제공하고, 연체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용이 장기화될 경우 높은 수수료율²⁾로 인해 오히려 더 큰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1)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1조제1항

2) 카드사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연 10% 중·후반 수준의 수수료율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³⁾는 신용카드 관련 연체료율 등을 신용카드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특화된 고지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대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근거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⁴⁾에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의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할인율·연체료율·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2.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라. 대출성 상품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⑥ 법 제19조제1항제1호라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설명의무) ⑤ 영 제13조제6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에 지불하는 서비스의 위험성 및 관련 예시

제13조(설명서)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 다만, 예금성 상품 등 설명서의 내용이 간단하여 요약이 불필요한 금융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

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3) 대출성 상품: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나) 신용카드: 다음의 사항

가입 권유 시에 설명서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의 위험성, 관련 예시 등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⁵⁾은 신용카드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가입 시 및 대금 청구 시에 최소결제비율·수수료율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⁶⁾은 사업자가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⁷⁾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매월 사용대금 중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에 지불하는 서비스의 위험성 및 관련 예시

5)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2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

② 카드사는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권유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설명서의 주요 내용(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음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⑥ 카드사는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카드이용 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카드이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라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수수료가 부과되는 첫 번째 월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마지막 월을 포함하여 개월수로 표시), 총 수수료금액(해당 회원에게 적용한 최근 월의 수수료율을 적용), 총 원금잔액(총 이월잔액)에 대해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36조(수수료율 등)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또는 연체료율에 대해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후 적용 수수료율 등은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변동, 카드사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개별통지하여 드립니다.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7)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참조).

< 개정안과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규정내용 비교 >

‘가입시’ 설명서		이용대금 ‘청구시’		거래조건 ‘변경시’	
표준약관	개정안	표준약관	개정안	표준약관	개정안
최소결제비율,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	-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 비율	좌동
수수료율· 연체료율	좌동	-	수수료율· 연체료율	수수료율· 연체료율	좌동
-	상환완료일까지 매월 예상 청구금액	약정결제비율로 상환시 예상 상환기간	상환완료일까지 매월 예상 청구금액	-	-
-	상환완료일까지 예상 총 수수료	약정결제비율로 상환시 예상 총 수수료	상환완료일까지 예상 총 수수료	-	-
일시 상환방법	좌동	-	-	-	-
이월잔액 발생시 신용도 하락 가능성	-	총 이월잔액	이월 잔여기간 및 잔여금액	-	-

□ 그런데, 일부 신용카드회원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의 수수료율 등 실질 비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지는 사례가 있음.

□ 개정안은 약정 체결 시나 거래조건 변경 시의 1회성 고지만으로 는 실질 비용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대금 청구 시마다 수수료율 등을 반복적⁸⁾으로 고지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거래비용 인지도를 높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

8) 3단계 고지의무: ① 체결 시 1회 설명서 제공 → ② 매 대금청구 시마다 반복 고지 → ③ 조건 변경 시 추가 고지

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법률에 세부 고지항목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의 타당성) 개정안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의 3단계 고지의무 세부항목을 법률에 열거하여 규범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러나, 여러 금융서비스 중 이 약정에 대해서만 세부적·기술적 사항까지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금융서비스 세부항목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고, 향후 서비스 환경 변화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 제16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약정 체결 시에 “상환완료일까지 매 결제일에 청구될 예상 금액” 및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청구될 총 수수료”를 포함한 설명서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약정은 매월 신규 이용금액이 추가되는 개방형 구조이고, 약정 체결 이후 신용카드회원이 대금 이월 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⁹⁾, 약정 체결 시점에 상환완료일과 기간별 청구액을 확정

9)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4조(약정기간)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회원이 이용을 신청한 시점부터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최장 5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약정만 체결한 회원에 대해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설명·고지 항목이 세부적·기술적 사항인 만큼 법률에 모두 열거하기보다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것이 탄력적인 법 적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또한,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경우,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신설 조문보다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¹⁰⁾를 개정하는 방식이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임.

- (과태료 상한액) 개정안은 설명서 제공 및 고지 의무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사한 고지·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제재수준과 비교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12개월마다 동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 시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정이 연장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할인율·연체료율·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2.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고지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 >

위반사항		과태료 상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제2항	금리인하요구권 미안내	2천만원
보험업법 제110조의3제2항		
은행법 제30조의2제2항		
보험업법 제95조	보험안내자료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 (부칙 적용례)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할 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법 시행일 전 체결되어 기간¹¹⁾이 남아 있는 약정에 대해 동 개정안을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함.

개정안이 대금청구 시마다 고지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이 법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약정부터 적용할지 또는 기존 약정에도 적용할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13

11)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4조(약정기간)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회원이 이용을 신청한 시점부터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최장 5년)할 수 있습니다.